

한시적 근로자(조리보조원) 공개채용 공고

대구시설공단 한시적 근로자(조리보조원)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9일

대구시설공단 이사장

1. 채용예정인원

○ 한시적 근로자 : 1명

직렬	채용인원	계약기간	근무부서	비고
조리보조원	1명	2021. 3. 8. ~ 2021. 5. 7. (2개월)	노사협력팀 (남구 대명로 29)	

※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2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

○ 공단 인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인사규정 제1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하거나 그로 인해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‘취업가능’ 또는 ‘취업승인’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.

나. 응시자격

구 분	자 격 요 건
연 령	○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
주 소 지	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예정자 등록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-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(1,095일) 이상인 자
기 타	○ 주말, 공휴일 및 주·야간 근무 가능자

※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, 합격예정자 등록 이후라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고 모집하지 않음.

3. 업무 및 보수

가. 업무내용 및 보수

직 렬	근무시간	근무내용	보 수
조리보조원 (한시적근로자)	(주 5일, 일 4시간) 10:30 - 15:00 (매월 2, 4주 금요일 휴무)	조리사 업무 보조 (조리 및 기구위생 업무 등)	일 급 : 35,770원 급식비 : 50,000원/월

※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, 주말근무, 초과근무가 발생 할 수 있음

나. 근무장소 : 대구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시설공단 본사 8층 구내식당

다. 보수는 일급으로 산정되어 월 1회 지급되며 4대 보험 포함된 금액입니다.

라.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초과근무(연장, 야간, 휴일)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.

마.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을 준수합니다.

4. 계약기간 및 고용

가. 직 종 : 한시적 근로자(조리보조원)

나. 고용기간 : 2021. 3. 8. ~ 5. 7. (2개월)

※ 최초 2개월 계약 이후 근무성적 우수자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8개월까지 근무가능
다. 고용계약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되고, 재계약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5.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

가. 전형절차 및 일정

채용공고	원서접수	서류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합격자 발표	등록기간
2. 19.(금)~ 2. 26.(금)	2. 22.(월)~ 2. 26.(금)1800	3. 2.(화)	3. 3.(수)	3. 3.(수)	3. 4.(목)~ 3. 5.(금)
대구시, 공단 홈페이지 등	전자메일	개별통보	장소는 추후통보	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	본사

※ 채용일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원서접수방법

-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마감일 2021. 2. 26.(금) 18시까지 전자메일(vosd12@dgsisul.or.kr)로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자의 착오,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.
-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, 경력사항,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. 또한, 지원서 기재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다. 서류심사 합격여부

-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.
-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라. 면접시험 방법

-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면접시험은 **블라인드** 방식으로 실시합니다.
 - ※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마. 합격예정자 결정방법

- 면접심사위원 3명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채점표에 기록한 개인의 총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 선발.

바. 합격자 발표 : 2021. 3. 3.(수) 예정

6. 기타사항

- 가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- 나.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존 합격자가 2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다.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,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라. 합격예정자 등록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, 근무 시작일은 우리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마. 계약기간은 최초 2개월 계약하며,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, 최장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합니다.
- 바.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로 금융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, 그렇지

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.

사.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,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.

-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.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
- 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

아.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
자. 접수 미확인, 착오 및 누락,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차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dgsisul.or.kr>) 및 대구시설공단 채용담당자(053-603-1126)에게 문의바랍니다.

※ 응시원서(이력서) 및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(HWP) 받으세요.